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가합595931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복

담당변호사 신환복, 정태화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3. D

변 론 종 결 2021. 7. 8.

판 결 선 고 2021. 8. 19.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20. 10. 22.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 11. 27.까지, 피고 C은 2021. 4. 14.까지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2020. 8. 31.자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20. 9. 2. 접수 제768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과 피고 C 사이의 2020. 8. 31.자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 D은 피고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20. 9. 2. 접수 제768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20. 2. 19.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피고 B의 위탁을 받아 수입한 제품을 매입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 B는 원고와 사이에, 2020. 2. 21.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E, 보험기간을 2020. 2. 19.부터 2021. 2. 18.까지, 보험가입금액을 4억 원, 보험계약내용을 수출(수입)대행계약에 따른 지급보증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B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보험사고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 E는 2020. 8. 11.경 피고 B에게 'E가 피고 B에게 2020. 6. 17.부터 2020. 7. 2.까지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 B는 물품대금 지급일인 2020. 8. 5.까지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계속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피고 B는 2020. 8. 18.경 E에게 '2020. 9. 15.까지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나, 위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보증보험을 청구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 E는 2020. 9. 16. 원고에게 피고 B가 위 약정기한인 2020. 9. 15.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금청구를 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20. 10. 21. E에게 보험금 4억 원을 지급하여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 및 피고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취득하였다(이하 위 각 채권을 합하여 '이 사건 구상금채권 등'이라 한다).
다. 매매예약 체결 등

매매대금	칠억오천만원(750,000,000)	
계약금	이천만원(20,000,000)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삼천만원(30,000,000)	8/20

[특약사항]
* 허가는 매도인으로 접수하고 허가득후 수허가자 변경을 한다

- * 명의 이전시 부채정리는 매수인이 한다.
- * 명의이전 까지 금융권 이자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 * 설정금액 이억원은 매도인이 정리하며 매수인은 이억원으로 정산한다.
- * 잔금은 2020. 8. 20.로 한다.
- * 명의이전은 8.20. 잔금지급 후로 한다.

○ 피고 D은 2020. 7. 23.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일부를 청할 경우 '제○항 토지'라 한다)를 7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 D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2020. 7. 23. 2,000만 원, 2020. 8. 20.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 피고 B, C은 2020. 8. 31. 피고 D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C이 피고 D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7억 5,0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피고 B는 2020. 9. 2. 피고 D에게 제1항 토지에 관하여 2020. 8. 3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20. 9. 2. 접수 제768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 피고 C은 2020. 9. 2. 피고 D에게 제2항 토지에 관하여 2020. 8. 3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20. 9. 2. 접수 제768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위 가등기를 합하여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4억 원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20. 10. 22.부터 위 각 피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인 피고 B은 2020. 11. 27.까지, 피고 C은 2021. 4. 14.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지연이율인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 C은 이 사건 각 토지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D과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수익자인 피고 D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D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20. 2. 2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 등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점, 피고 B는 2020. 8. 5.경부터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 B의 위와 같은 재정상태 악화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 등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의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2020. 9. 16. 보험사고가 발생한 점, 이에 원고가 2020. 10. 21. E에 물품대금을 대위변제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는 피고 B, C에 대하여 이 사건 구상금 채권 등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 등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B, C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은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는 제1항 토지를 2018. 4. 27.경 6억 9,000만 원에, 피고 C은 제2항 토지를 2019. 5. 8.경 6,500만 원에 각 매수하였는데 2018. 6. 15.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매매예약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채권자를 신용보증기금, 청구금액을 5억 4,000만 원, 채권자를 한국무역보험공사, 청구금액을 1억 8,000만 원, 채권자를 경기신용보증재단, 청구금액을 1억 8,200만 원, 채권자를 F, 청구금액을 173,862,875원, 채권자를 G 주식회사, 청구금액을 126,889,614원으로 한 각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피고 B, C의 소극재산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위 각 피고들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D과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사해의사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피고 B, C이 각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D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준 이상 피고 B, C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D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4) 피고 D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은 이 사건 매매예약이 원고 등 피고 B,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1 내지 3, 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은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1) 피고 D은 피고 C과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않고, 피고 B, C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 D은 건설업을 하고 있어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도소매업 등을 하는 피고 B, C의 영업상황이나 채무상태를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각 토지 중 H조합 명의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와 주식회사 I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외에 다른 제한물권이나 가압류등기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고, 그 밖에 피고 D이 피고 B, C의 신용상태를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2) 피고 D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개발시행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 이전인 2020. 7. 23. 피고 B, C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금 및 잔금으로 합계 5,0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고, 그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무 합계 7억 원을 피고 D이 인수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 B가 2019. 3. 25.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적이 있어, 피고

D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피고 B 명의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추후 허가자를 피고 D으로 변경하려고 하였는데 위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피고 D의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가등기를 마쳤다.

(3) 피고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의 근저당권자이자 지상권자인 H조합으로부터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위하여 담보토지사용신청 및 승낙서를 받았고, 피고 B의 H조합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근보증을 하였다.

(4) 피고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를 위하여 관할관청의 요구에 따라 서류보완 등 민원 사무를 처리하고, 2021. 1.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을 위하여 개발행위를 허가받았다. 또한, 피고 D은 관할관청에 위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등록면허세, 이행보증금 등을 납부하였다.

(5) 앞서 본 피고 B, C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금액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묘지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D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내지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D이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게 된 목적과 매매예약 체결 이후 토지 이용 상황 등을 보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명수, 판사 김미경, 판사 김현영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파주시 J 임야 9,086㎡
2. 파주시 K 전 182㎡, 골,

